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. 11. 26 선고 2020가단2540 판결 [가등기말소(사해행위취소)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21. 10. 15.

판결 선고 2021. 11. 2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4. 22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.
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4. 23. 접수 제84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, 같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. 4. 24. 접수 제79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2017, 4. 27. C와 주식회사 D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고, 차용증서를 교부받았다.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부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, 이에 기하여 가등기를 마쳐주었는데, 이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원고는 사해행위취소로서 피고와 C 사이의 위 매매예약 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.

2. 판단

먼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,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에 C이 날인한 사실을 인정된다.

차용증서

일금 7억 원 정

충남 홍성군 E, F

G H동 집합건물 I호, J호

G K동 집합건물 L호, M호, N호, J호

G O동 집합건물 M호, N호, J호, P호, Q호, R호 총 12세대

1. 위 상기 부동산을 C으로 등기 완료 후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설정을 한다.
2. C은 2순위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상기 부동산에 대한 은행담보 대출금 및 2순위 근저당 설정권을 주식회사 D에 승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다.
3. 주식회사 D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C에 대한 채무 및 소유권 행사 권리는 소멸되고 무효화되며 본 차용증서 원본은 회수한다.

*첨부서류 : 인감증명서 각 1통

*특약사항 : 원고는 2017타채8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, 2017타채846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에 대한 취하 및 해제 신청을 당일 즉시 법원에 제출하고 미제출시 증서는 무효화 된다.

성명 : C

성명 : 주식회사 D 대표이사 S

그러나, 위 차용증에 의하더라도, C은 위 G 집합건물 각 호실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원고에게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무가 있다는 내용일 뿐으로 이는 주식회사 D의 채무를

물상보증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, C이 원고에게 위 7억 원을 직접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,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C이 원고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,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, 이를 보전하기 위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.

판사김지현

별지